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9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농협손해보험㈜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 과징금 12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(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)

◦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농협손해보험㈜(이하 '회사')의 「무배당투패스초간편건강보험2004」 등 11종의 보험약관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"암"으로 진단 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

- 회사는 2020. 7. 27. ~ 2023. 12. 11. 기간 중 36건의 보험계약에

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5.7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

2.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(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)

◦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회사의 「무배당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」 등 7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「뇌졸중진단비보장」 특별약관 등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

- 회사는 2020. 1. 8. ~ 2023. 7. 6. 기간 중 「뇌졸중진단비보장」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의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, 그 결과 보험료 총 1.2백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보험업법」 제127조의3(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)
○ 「보험업법」 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재)